

산림재난방지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7일, 정희용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의원)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명령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호수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통제 제도와 수목 진료, 나무의사와 같은 새로운 제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

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법률안의 입법 배경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림재난은 다양화 및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2023년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피해)으로 인한 피해면적 및 피해 고사목을 살펴보면, 각각 4,992ha, 459ha 및 107만 그루로 파악되는데,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해서 1.2배(ha), 1.8배(459ha), 1.1배(107만 그루)¹⁾가 증가한 것임.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이하 “산림재난”)은 발생하게 되면,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피해규모 예측은 불가능하고 인근 산림 및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림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1)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2014년 대발생(218만그루) 이후 피해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107만그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산림보호법」은 i)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²⁾ 등 산림보호와 관련된 사항과 ii) 수목진료 및 나무의사 등 수목 치료에 대한 제도³⁾ 등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산불·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임.

또한, 현행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은 재난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난 분야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⁴⁾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산림재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하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므로, 산림재난 분야에 대한 개별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재난별 특성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 훈령) 및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일부 산림재난 예방 및 긴급조치, 재난기반시설, 한국산림재난기술공단 등 산림재난방지를 강화

2)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관련 규정(제7조부터 제19조까지)

3) 「산림보호법」: 수목치료 및 나무의사 관련 규정(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14까지)

4) 「재난안전법」에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 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관리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나.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불, 산불방지, 산불유관기관, 산사태, 산사태예방, 산사태유관기관,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정보체계” 등 용어를 비롯하여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등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 훈령) 등으로 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및 복원에 이르기까지 산림재난에 특화된 하나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선제적으로 산림재난에 대응 및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고, 산림청도 이러한 제정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호수의 지정·관리, 수목 치료 제도(나무의사)에 관한 일부 규정들만 남겨지게 됨으로써, 「산림보호법」(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 제정 당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자연적·인위적 산림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인 법적 기반

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법 의지⁵⁾ 및 이를 반영한 법 제명과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보이고,

같은 법 제1조(목적) 중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
하는 내용,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
해”로부터 산림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원칙, 제4조(적용범위) 중 “산림
병해충”에 관한 내용,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중 “산불 예방,
산불 진화”에 관한 내용 등이 제정안 부칙에 따라 산림재난에 관한 사
항이 삭제되는 「산림보호법」과 부합하지 않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산림보호법」의 개정 절차가 필요해 보임.

다.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본칙 9개의 장, 9개의 절, 80개의 조 및 부칙 11개의 조로 구
성되는데, 본칙은 총칙, 계획 수립 및 대비, 산림재난 예방, 산림재난 대
응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한국산림재난안
전기술공단,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 대비 제정안을
비교하면, 제정안에는 산림재난 예방, 산림재난 대응 등, 재난방지 기반
조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관한 사항 등 26개의 조가 새로이
추가됨.

5) 「산림보호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4., pp.7~8.

“이 법안은 (중략) 산림보호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규정들
을 신설함으로써 산림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정의	- 산림재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산림재난 위험지도,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복구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 및 대응·복구·복원하고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4조	적용범위	- 산불과 산사태에 관한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을, 산림병해충은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에 대해 적용
제5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림재난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름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8조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제9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10조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위험지도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를 실행하고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작성·배포하여야 함
제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예측정보, 위험지도 등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산림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에 활용하여야 함
제12조	산림재난상황실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3조	산림재난대응단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재난별 지원인력을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음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14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 -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방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
제15조	산불 예방 등	- 산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예방·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장비 점검 및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및 산불방지 사업의 수행 -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에 따라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
제16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 피우거나 담배 꽂초를 버리는 행위 등 금지 - 다만,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허용 가능 - 시장·군수 등은 산불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와 산불조심기간 중에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
제2절 산사태 예방		
제17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 산림청장은 산사태조심기간 동안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제18조	산사태 예방 등	- 산림 및 산림과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산사태 관계인”이라 한다)은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제19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제20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21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제22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사방시설 훼손, 사방시설 설치·관리 거부 또는 방해 행위) 규정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제24조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지 매수·교환	- 산사태취약지역 및 그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
제3절 산림병해충 예방		
제25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 중앙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제26조	산림병해충 예방 등	-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제27조	예찰	-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예찰의 방법, 시기 및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마련 -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진화 등		
제28조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 산불 발생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 및 공고
제29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산불 경보가 발령되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통제 등 필요한 조치의 의무화
제30조	산불 신고 및 보고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 활동을 실시
제31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	- 산림청장은 산불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여 해당 및 인접지역의 산불진화 자원 동원을 요청
제32조	대피명령 및 강제	-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로 인해 사람의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대피조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주민 대피명령 및 강제 대피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요청
제33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통합지휘하되, 국유림·공유림·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 -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대형산불로 확산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 다만, 산불이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산불은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제34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산불현장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방지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 체계를 구축
제35조	협조	- 산림청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소방 지원활동), 경찰, 군부대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요청 및 요청받은 기관의 장에게 협조 의무 부과
제36조	산불진화단 등 설치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진화단 설치·운영하고 산불의 진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지휘·통솔 등의 업무를 수행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역 주민 중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산불자율진화대를 구성·설치
제2절 산사태 대응		
제37조	산사태 조심기간 설정 등	- 산림청장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사태 조심기간으로 지정
제38조	산사태 신고 및 보고	- 산사태를 보거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청장 등은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제39조	산사태대응팀 설치	- 산림청장 등은 산사태 예방·대응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
제40조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 등	-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 -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주민 대피명령 및 강제 대피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요청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41조	산사태 긴급점검	-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지시
제3절 산림병해충 대응 등		
제42조	산림병해충 신고 및 보고	-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사람은 산림청, 지역산림병해충 예찰·방제기관에 신고 -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제43조	산림병해충 방제 명령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방제에 관한 조치를 명령
제44조	방제	- 산림병해충 방제 시 일시·지역·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하며,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방제 후에 공고
제45조	방제사업 설계·감리	- 일정 규모 이상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며,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종류 규정
제46조	산림병해충 특별 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제47조	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	- 산림청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은 예찰·방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림병해충대응팀을 설치 - 산림청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은 신속한 예찰·방제 추진을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복구		
제48조	산불 조사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 산불조사를 실시
제49조	산불피해지 복구 등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
제50조	산불 대응분석·평가	-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2절 산사태 조사·복구		
제51조	산사태 조사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피해지에 대하여 산사태 원인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산사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52조	산사태 발생지 복구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
제53조	산사태 대응분석·평가	-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54조	산림병해충 조사	-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림병해충 조사를 실시
제55조	방제효과조사	-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검증과 방제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제효과조사를 실시
제56조	산림병해충 대응 분석·평가	-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 기관의 장에게 통지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57조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도, 사방댐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을 설치
제58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 산림청장은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제59조	산림항공기 운용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활동,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등의 사고 예방과 대응, 산림오염 방지·정화 및 산림사업 지원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운영
제60조	산림재난방지 교육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의식을 기르고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
제61조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 실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사업 수행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62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
제63조	정관	- 공단은 정관을 제정·운영하고, 이사장·임원·직원을 두고 산림재난방지의 지원사업을 수행
제64조	임원 및 직원	
제65조	임원의 결격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에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의 설립 및 운영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제66조	사업	- 공단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사업의 수입금, 기부금 등 -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서를 제출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림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
제67조	공단의 운영비	
제68조	예산과 결산	
제69조	업무 지도·감독	
제70조	「민법」의 준용	
제8장 보칙		
제71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제72조	산림재난보험 등 가입	-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난보험 가입을 권장
제73조	포상	- 산림재난방지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제74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공무원 및 관계직원에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잠시 사용,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 가능
제75조	권리·의무 등 승계	-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및 신청·신고는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
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산불조사·산사태 조사 및 산림병해충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제77조	산림재난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어기거나 게을리한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직원을 문책
제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제9장 벌칙		
제79조	벌칙	-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과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 설치·관리를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 산림재난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미수범에 대하여 벌금형
제80조	과태료	- 기타 산림재난 관련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구분	조 제목	주요 내용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산림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간주
제4조	장기계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산불방지장기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은 이 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으로 간주
제5조	연도계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은 이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으로 간주
제6조	방제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은 이 법 제43조에 따른 명령으로 간주
제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간주
제8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간주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산림보호법」을 적용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방사업법, 산림보호법 등 개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봄

라. 제정안의 총괄적 검토

제정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과 연계가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림보호법」상 분리·이관된 관련 조문이 산림재난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분리·이관하여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처럼 「산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법」의 개정 절차가 필요하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산림보호법」상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을 삭제 및 조문 내용을 정리하는 취지의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미발의된 상태임.

제정안에서는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보호법」상 관련 조항을 단순히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잔존하는 산림보호법 조문간 서로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발생하느냐, “다른 법률의 개정”이란 법률 형식적 측면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산림보호법」의 실체적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제방식으로 보기에 어려움.

따라서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림보호법」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산림보호법」의 개정 입법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재난안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조문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중복된 측면이 있거

나 산림재난의 특성과 관련성 및 체계상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임.

예를 들면, 안 제12조는 “산림청”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산림재난상황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⁶⁾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상황실⁷⁾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유사 기구의 설치로 인한 time lag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조직을 이원화하여 조직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안 제13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를 차용하여 산림재난별 지원인력⁸⁾(안 제36조제2

6)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7) 산림청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 1의3)에 따라 “산불 및 산사태”에 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임.

8) 【 현행 산림재난대응단에 포함되는 산림재난별 민간지원인력 운영 체계 】

구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근무기간	6개월	5개월	10개월
근무시기	봄철(1.15~5.15) 가을철(10.15~12.15)	5.15~10.1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집중운영(통상 10월 ~ 익년도 3월, 제주도는 4월 까지)
규모	9,604명 (10명 내외 / 1개조) * 지방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에 지원	190개단 760명 (4명/ 1개단) * 국유림관리소와 기초지자 체에 1개단씩 지원	375개단, 1,500명 (4명/1개단) *국가 328명, 지자체 1,172명
주요업무	산불방지 계도, 산불요인사 전제거 등 예방,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장비 유지·관리 등	취약지역 점검 배수로 정비, 간단한 보, 주민대피 안내 피해지 조사·복구 지원	병해충 예찰 및 피해조사 피해목 시료채취, 검경의뢰 지상방제(약제살포·나무주사) 피해목 제거(벌채·수집·파쇄)
비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안 제39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안 제46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월간 단위로 시기와 기간을 달리 하여 운영되고 있는 민간지원인력을 연간 단위로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재난분야의 지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러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구조·구급대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전문인력 단위조직으로, 구조·구급 분야별 소방공무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인 반면,

제정안의 산림재난별 지원인력은 산림재난별 특성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지원인력이라는 점에서, 119구조·구급대와 같이 인력을 통합·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조의 위치 및 제목은 “안 제2장(계획 수립 및 대비)”에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림재난에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조직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산림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하여 연중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재난안전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 법률을 직접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되 산림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내용을 차용함으로써 법체계상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조문은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셋째, 제정안은 목적 및 적용 범위 등에 산림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법」의 체계와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산림복원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의 이용 및 보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산림복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할 것을 규정하면서⁹⁾, 목적

9) 「재난안전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¹⁰⁾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대로 “복원”을 산림재난관리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재난관리에 복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재난안전법」의 목적 및 이념에 비추어 다소 부합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원에 관한 규정들과도 중복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넷째, 제정안은 산림재난별로 행정기관의 명칭을 각각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산림재난방지에 있어 같은 기능 및 역할을 하는 같은 행정기관을 특별한 사유없이 달리 표현하거나 일부 조항에서는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혼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통일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상 모순되는 문제가 있어 법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보이므로, 행정기관을 각각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은 각 조 및 항에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i) 산불의 경우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장으로, ii) 산사태의 경우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으로, iii) 산림병해충의 경우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으로 달리 명칭하면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10) 「재난안전법」 제2조(정의)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등도 혼용하고 있어 법률용어의 통일성·일관성 및 법문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일부 조문에서는 권한 주체가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문별로 관할 행정기관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각각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다섯째, 제정안은 산림병해충의 예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산림재난 예방) 제3절(산림병해충 예방)에서, 산림병해충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산림재난 대응 등) 제3절(산림병해충 대응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안 제2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제정안의 체계에 맞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의 정의를 수정하고,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의 체계는 산림재난을 예방 및 대응의 2개 장으로 나눠 산림재난별로 규정하는 방식이고, 안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르면 “방제”는 예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찰”은 조사 또는 진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데,

안 제3장 제3절에서는 안 제25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안 제26조(산림병해충 예방 등) 및 안 제27조(예찰)를,

안 제4장 제3절(산림병해충 대응 등)에서는 안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안 제44조(방제), 안 제45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안 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의 규정을 각각 두고 있어 절

제목 및 제정안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제정안의 정의규정 중 “산림병해충 예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산림병해충 예찰의 개념을 포함하는 “산림병해충 예방” 및 산림병해충 제거를 뜻하는 “산림병해충 대응”으로 각각 정의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